

세종북부경찰서

2026. 7. 24.

제 2026-00406 호

수 신 : 김명호 귀하

제 목 : 수사결과 통지서(고소인등·불송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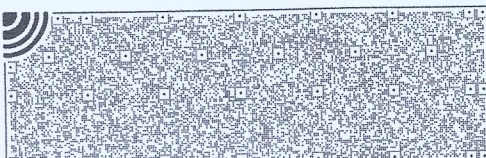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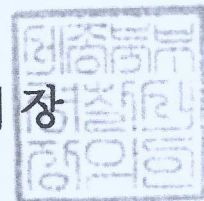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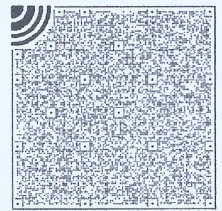
접수일시	2026. 6. 17.	사건번호	2026-001191
죄명	법왜곡		
결정일	2026. 7. 23.		
결정종류	불송치 (각하)		
이유	별지와 같음		
담당팀장	수사1팀 경감 김경수		☎ 044-330-0217

※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-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(범죄피해자보호법)
 -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-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)
 -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-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)
 - 각급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-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
 -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등
- 뺑소니·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
 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1544-0049)에 청구 가능
-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
 -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,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
-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
 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(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)
-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
 -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-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
 - www.humanrights.go.kr, 국번없이 1331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
 -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
세종북부경찰서장





【 별지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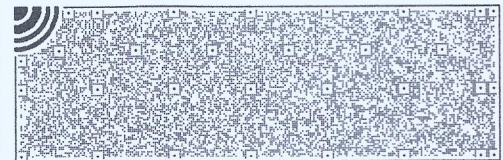
【 결정 종류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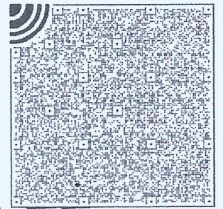
불송치(각하)

【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】

피의자 황00은 2026. 4. 17.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 접수된 대전검찰청 2026 형제10065호를 이송받았음에도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으로서,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,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왜곡

- 고소인은 2026. 6. 11. 및 같은 달 18. 대전지방검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'세종 남부경찰서 황00 경감 고소한다'라는 제목으로 위 피의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며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.
- 고소인은 위 피의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법령의 적용 요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을 하나, 이러한 내용을 증빙할 만한 자료 및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출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.
- 이에, 고소인의 전화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"황00 그 개새끼 돌대가리 새끼! 그 새끼 사건은 서류를 확인하면 되잖아. 내가 왜 나가냐고. 다 작성했잖아. 왜 전화해서 내 시간을 뺏는 거야. 안 나가. 제출할 것도 없고.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잖아.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! 황00 그 개새끼 먼저 조사하라고, 나를 왜 불러. 전화하지 말고. 내 생년월일은 왜 물어. 1900. 0. 00.이야."라고 언성을 높이기만 할 뿐, 단순히 고소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사건 종결한 사실이 법왜곡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.
- 그러나, 피의자의 이러한 종결은 『2026. 3. 30. 국가수사본부에서 '국민신문





고 등 수사 민원 처리 절차 확행 재강조'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 — ,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고소·고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수단서는 '진정'으로 수리(2022헌마748 결정 등 참조), 진정으로 접수 후 진정인이 출석하여 수사관에게 고소·고발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서면으로 고소·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고소·고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'고소·고발'로 전환하여 처리』라는 수사실무지침(수사기획담당관-7260(25. 9. 26.) 하달 내용 등을 관련근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.

-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고소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건을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외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.
- 각하한다.

※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·심의신청 방법

<결정 종류 안내>

-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.

<이의·심의신청 방법>

-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(고발인은 제외)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.
- 수사 심의신청 제도(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)
 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시·도 경찰청 「수사심의계」에 심의신청

